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10. 13 -----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0. 18

다. 상 정 일 자 : 제87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2차 총무위원회(10. 30) 상정,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윤여철 세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○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구청장의 자문기구인 구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토지 및 건축물 등의 과세표준액 결정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세 과세표준심의 위원회를 설치(안 제14조의2 제1항)

○ 위촉위원의 자격(안 제14조의2 제2항)

○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(안 제14조의2 제3항)

○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(안 제14조의2 제5항) 등

3. 관련법령

○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

○ 지방세법시행령 제8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이번 개정조례는 구청장이 구세를 부과하기 전에 토지 및 건물 등의 과세표준액 결정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항으로서,

○ 자문기관인 위원회에서는 설치 근거, 위원회의 기능, 위원회의 구성, 위원의 임기, 위원장의 직무규정, 운영세칙 규정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, 본 안은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 실비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제14조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답변 요지

질의위원	질의내용	답변요지
이상은 위원 이용조 위원 최선용 위원 이모영 위원 최영만 위원 고광웅 위원	·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촉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활동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등 위원회의 실비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본 조례상에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? · 본 조례 제14조의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과도 형평이 맞지 않다고 보며 회의 수당 등 예산집행사항은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	·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위원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봄.

6. 토론요지 : 없 음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붙 임 : 수정안 대비표

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4조의 2(과세표준심의위원회) ① ~ ⑥ (생 략) 〈 신 설 〉 ⑦ (생 략)	제14조의 2(과세표준심의위원회) ① ~ ⑥ (개정안과 같음) ⑦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(개정안의 제⑦항과 같음)